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0

(비공식번역본)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 및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의 설정 요건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Pest Free Places of
Production and Pest Free Production Sites

1999

FAO/IPPC 사무국

차례

승인
검토 및 개정
배포

서론

적용범위
참고 문헌
용어 정의 및 약어
요건의 개요

1.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 및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의 개념

- 1.1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 및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의 적용
- 1.2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 및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과 병해충 무발생 지역의 구분

2. 일반 요건

- 2.1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 또는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의 필수 요소
 - 2.1.1 병해충의 특성
 - 2.1.2 생산장소 및 생산포장의 특성
 - 2.1.3 생산자의 운영 능력
 - 2.1.4 국가식물보호기관의 의무 및 요건
- 2.2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 또는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의 설정 및 유지
 - 2.2.1 병해충 무발생을 설정하기 위한 시스템
 - 2.2.2 병해충 무발생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 2.2.3 병해충 무발생에 도달하였거나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
 - 2.2.4 생산물의 동일성(identity), 화물의 보존성(integrity) 및 식물위생상의 안전성
- 2.3 완충지대에 관한 요건

3. 문서화 및 재검토

- 3.1 일반 기록
- 3.2 식물위생증명서 상의 부기
- 3.3 정보 제공

승 인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국제기준은 FAO의 식물검역에 대한 정책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PPC 사무국에 의해 작성된다. 이 프로그램은 무역을 촉진하고, 무역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조치의 사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FAO 회원국 및 다른 관련단체들이 이러한 기준, 지침 및 권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기준은 1999. 10월 잠정식물위생조치위원회(ICPM)에서 승인되었다.

FAO의장 Jacques Diouf

재검토 및 개정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은 정기적으로 재검토 및 개정된다. 이 기준의 차기 검토일자는 2004년 또는 식물위생조치위원회에서 정하는 다른 날짜이다.

기준은 필요시 갱신 및 재발행 될 것이다. Standard holder는 현재 사용되는 edition에 대해 보증해야 한다.

배 포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은 IPPC 사무국에 의해 모든 FAO 회원국 및 지역식물보호기구의 집행(기술)국에 배포된다.

- 아·태 식물보호위원회(APPPC)
- 카리브 식물보호위원회(CPPC)
- 남아메리카 식물보호위원회(COSAVE)
- 안데스 위원회(CA)
- 유럽·지중해 식물보호기구(Eppo)
- 아프리카 식물보호협의회(IAPSC)
- 북미 식물보호기구(NAPPO)
- 중남미 식물보호기구(OIRSA)
- 태평양 식물보호기구(PPPO)

서 론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식물, 식물성 산물 및 기타 규제물품의 수입을 위한 식물위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위험관리방안으로서,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 및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의 설정과 이용에 관해 기술한다.

참고문헌

식물위생용어집, 1999. ISPM Pub. No. 5. FAO

병해충 위험분석 지침, 1996, ISPM Pub. No. 2. FAO

감시를 위한 지침, 1997, ISPM Pub. No. 6. FAO

개정된 국제식물보호협약, 1997. FAO

국제교역과 관련된 식물검역원칙, 1995 ISPM Pub. No. 1. FAO

병해충 무발생지역 설정을 위한 요건, 1996 ISPM Pub. No. 4. FAO

특정 지역에서의 병해충 상황 결정, 1998 ISPM Pub. No. 8. FAO

용어 정의 및 약어

완충지대(Buffer zone)

특정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이 적으며 공식적으로 방제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감염지역, 감염된 생산장소, 병해충무발생지역,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포장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그와 인접하여 있으면서,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위생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지역

경계 설정 조사 (Delimiting survey)

어떤 병해충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간주되는 지역 또는 어떤 병해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지역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수행되는 조사

탐지 조사 (Detection survey)

병해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한 지역에서 수행되는 조사

포장 (Field)

어떤 상품이 재배되는 생산 지역내에서 한정된 경계를 가지는 한 구역의 토지

(화물, 포장, 생산장소에) 없는(Free from)(of a consignment, field or place of production)

식물위생질차의 적용에 의하여 검출될 수 있는 수 또는 양만큼의 병해충(또는 특정 병해충)이 없는

유입 (Introduction)

병해충의 정착을 야기하는 어떤 병해충의 침입

모니터링 조사 (Monitoring survey)

어떤 병해충 집단의 특성을 증명하기 위해 진행되는 조사

국가식물보호기관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IPPC에 의해 명기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설립된 공식 기관

병해충(Pest)

식물이나 식물성 산물에 해로운 식물, 동물 또는 식물병원체의 종, 계통 또는 생태형

병해충무발생지역 (Pest free area)

과학적 증거에 의해 증명된 바와 같이, 특정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조건이 공식적으로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 지역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Pest free place of production)

과학적 증거에 의해 증명된 바와 같이, 특정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으며, 적절한 경우, 이러한 조건이 일정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유지되는 생산장소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pest free production site)

과학적증거에 의해 증명된 바와 같이, 특정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으며, 적절한 경우, 이러한 조건이 일정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유지되어,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획되어 관리되고 있는 생산장소의 일정한 부분

식물위생증명 (Phytosanitary certification)

식물위생 증명서를 발행하게 하는 식물위생 절차의 이용

식물위생조치 (Phytosanitary measure)

검역병해충의 유입 및/또는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령, 규정, 또는 공식적인 절차

생산 장소 (Place of production)

단일 생산 또는 농장 단위로 운영되는 토지 또는 포장의 집합. 식물 위생목적상 분리하여 관리되는 생산포장(Production site)도 포함할 수 있음

규제물품 (Regulated article)

특히 국제수송과 관련하여, 병해충이 잠복 또는 전파될 수 있는 저장 장소, 포장, 수송 수단, 컨테이너, 흙 및 여타의 생물체, 물품 또는 물질

조사 (Survey)

어떤 병해충 집단의 특징을 결정하거나 어떤 종들이 그 지역에 발생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동안 실시되는 공식 절차

요건의 개요

이 기준에서는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로부터 식물, 식물성 산물 및 기타 규제물품이 수입될 때, 수출국이 수입국에게 특정 병해충이 없으며 수입국의 식물위생요건에 부합됨을 보증하는데 있어 “병해충 무발생”의 개념을 이용한다. 생산장소의 일정한 부분이 분리되어 관리되고, 병해충무발생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field)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을 이용하는 것은 해당 병해충의 특성, 생산장소의 특성, 생산자의 운영 능력 및 국가식물보호기관의 책임과 요건에 관한 기준(criteria)을 사용하는 것에 달려 있다.

국가식물보호기관이 식물위생조치로서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을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병해충 무발생을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
- 병해충 무발생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 병해충 무발생을 달성하였으며,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
- 생산품의 동일성(identity), 화물의 보전성(integrity) 및 식물위생상의 안전성

필요한 경우,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에는 적절한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유지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활동에는 시스템에 대한 문서화 및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적절한 기록 보존이 포함된다. 병해충 무발생을 입증하고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식물보호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재검토 및 감사절차가 필수적이다. 양자간 협정이나 약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1.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의 개념

1.1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 및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의 적용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란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지 않음이 과학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며, 적절한 경우, 이러한 상태가 정해진 기간동안 공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생산장소”를 말한다. 이 장소에서는 적절한 기간 동안 관련병해충이 부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입국이 요구하는 경우, 수출국은 그 장소에서 생산 및/또는 이동된 식물, 식물성 산물 및 기타 규제물품의 화물에 관련 병해충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병해충 무발생은 조사 및/또는 재배기간 중의 검사에 의해 설정되며, 해당 생산장소로 병해충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 시스템에 의해 유지된다. 이러한 운영은 적절한 문서에 의해 입증된다.

관련 병해충, 지역적 상황 그리고 수입국의 허용가능한 위험 수준에 따라, 수출년도에 실시하는 단순한 재배 중 검사로부터 몇 년 동안 실시되는 복잡한 감시 및 입증절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도의 조치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의 개념은 하나의 생산단위로 운영되는 토지 또는 포장의 집합체에 적용될 수 있다. 생산자는 전 생산장소에 대하여 요구되는 조치를 적용한다.

생산장소의 일정 부분이 독립된 단위로서 관리될 수 있는 경우,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해 생산장소는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병해충이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의 인접지역으로부터 침입하기 쉬울 경우,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의 주변에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적절한 식물위생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충지대의 범위 및 식물위생조치의 성격은 해당 병해충의 생태와 생산지역 또는 생산포장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1.2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과 병해충 무발생 지역의 차이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의 개념은 병해충 무발생지역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ISPM No. 4 : 병해충 무발생지역 설정을 위한 요건 참조). 병해충 무발생지역은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와 같은 목적을 가지지만, 이행방법이 다르다.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와 병해충 무발생지역의 모든 차이점은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병해충 무발생지역은 생산장소보다 훨씬 넓고, 많은 수의 생산장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 또는 여러 국가의 일부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병해충 무발생지역은 자연적 경계 또는 적절히 넓은 완충지대에 의해 분리될 수 있다.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는 관련 병해충이 만연해 있는 어떤 지역 내에 위치하면서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는 완충지대에 의해 분리된다. 병해충 무발생지역은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는 반면,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는 하나 또는 몇 번의 재배기간동안만 유지될 수 있다. 병해충 무발생지역은 수출국의 국가식물보호기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된다.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는 국가식물보호기관의 책임과 감독하에 생산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리된다. 해당 병해충이 병해충 무발생지역에서 발견되면, 전체 지역의 상황이 의심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병해충 무발생 생산지역에서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생산지역만이 지위를 상실하며,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다른 생산지역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병해충 무발생 지역에 위치하는 생산장소는 그 사실로써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를 위한 요건을 충족할 것이며, 수입국들은 이에 대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병해충 무발생 생산지역이나 병해충 무발생 생산지역을 관리방안으로 선택하는 것은 수출국내 관련 병해충의 실제 분포, 병해충의 특성 및 행정적 측면에서의 검토에 달려있다. 두 시스템 모두 적절한 식물위생상의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다; 병해충 무발생지역의 주요 안전성은 많은 생산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지역에 식물위생조치를 공통적으로 적용하는데 있다.; 병해충 무발생 생산지역의 주요 안전성은 관리절차, 감시 및 검사가 명확하고 집중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있다.

2. 일반 요건

2.1 병해충 무발생 생산지역이나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의 핵심 요소

어떤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을 병해충 무발생으로 보증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달려 있다.

- 병해충의 특성
- 생산장소 및 생산포장의 특성
- 생산자의 운영 능력
- 국가식물보호기관의 책임 및 요건

2.1.1 병해충의 특성

병해충이 적절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경우, 어떤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에 주어진 병해충이 적절한 안전수준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선언할 수 있다. 적절한 특징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병해충(또는 가능한 경우, 매개체)의 자연적 확산이 느리게 일어나고, 단거리 내에서 일어남
- 병해충이 인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음
- 병해충의 기주범위가 제한되어 있음
- 병해충이 이전의 계절에서 생존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 병해충의 번식률이 보통이거나 낮음
- 현장이나 실험실에서의 육안검사 또는 시험을 통해 병해충을 탐지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이용 가능함.
- 가능한 한, 병해충의 생태적 요소(예; 잠복기)와 생산장소의 관리요소가 병해충을 탐지하는데 방해되지 않음

병해충을 방제 및 관리하는데 있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병해충 무발생 생산지역이나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을 설정하여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2.1.2 생산장소 또는 생산포장의 특징

“생산장소:의 기본 정의(즉, 하나의 생산 단위 또는 경작 단위로 운영)가 충족되어야 한다. 관련 병해충과 지역 상황에 따라서, 생산장소 및 생산포장 및 필요시 완충지대에는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특성이 요구될 수도 있다.

- 병해충 감염원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위치하며 적절히 격리 (병해충의 이동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리적 형태가 유리)
-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경계에 의해 명확하게 구분
- 완충지대로 접근(적절한 경우)
- 생산장소 및 생산포장에 수출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병해충의 기주가 존재하지 않음
- 완충지대에(적절한 경우) 병해충의 기주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러한 기주의 병해충에 대해 적절히 방제

2.1.3 생산자의 운영 능력

생산자는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에 병해충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에 적절 하며, 적절한 식물위생조치를 적용하여 병해충 무발생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국가식물보호기관에 의해 간주되는 관리, 기술 및 운영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생산자나 국가식물보호기관은 필요시 완충지대에 대해서도 적절한 식물위생조치를 적용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2.1.4 국가식물보호기관의 책임 및 요건

국가식물보호기관은 생산자가 어떤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이 요구되는 식물위생상의 안전성을 보장함을 선언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건을 정해야 한다. 국가식물보호기관은 병해충 무발생을 입증하기 위한 감시, 검사 및 기타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어떤 병해충과 기주에 있어, 요구되는 관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어느 국가에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국가식물보호기관은 이러한 관리시스템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식물보호기관은 수입국의 규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및/또는 요건을 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조건을 양자간에 체결하여야 한다.

2.2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 또는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의 설정 및 유지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 또는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국가식물보호기관이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병해충 무발생을 설정하기 위한 시스템
- 병해충 무발생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 병해충 무발생을 달성하였거나 유지되었음을 증명
- 생산품의 동일성(identity), 화물의 보존성(integrity) 및 식물위생상의 안전성

2.2.1 병해충 무발생을 설정하기 위한 시스템

일반적으로 국가식물보호기관은 어떤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을 병해충 무발생으로 선포하기 위해 생산자가 충족해야 할 일련의 조건을 지정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적절한 경우 완충지대)의 특성과 생산자의 운영능력과 관련될 것이다. 특정 조치가 적용됨을 보증하기 위해 국가식물보호기관과 생산자(또는 생산자 단체) 사이에 공식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일부 경우에 있어서 국가식물보호기관은, 화물이 수출을 위해 증명되는 연도의 이전 몇 년 동안 공식적인 감시를 받아 병해충 무발생을 입증해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무발생 입증 방법은 수출 당해연도에 무발생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할 수도, 다를 수도 있다(2.2.3항 참조).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식물보호기관이 수출 당해연도에 대해서만 병해충 무발생을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서든지, 국가식물보호기관과 생산자의 목적은 몇 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의 병해충 무발생 상태를 유지하는데 있다.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 또는 완충지대에서 병해충이 발견되어 병해충 무발생 상태를 취소하고, 그러한 원인과 재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병해충 무발생 상태를 재 설정 및 입증하기 위한 특별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이 설정된 경우에는, 경계설정조사를 통해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2.2.2 병해충 무발생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국가식물보호기관은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 또는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가능한 경우, 완충지대)에 대해 재배기간 전 및/또는 재배기간 중 특별한 조치가 적용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국가식물보호기관은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 감독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목적은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으로 병해충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전에 감염되었으나 탐지되지 않았던 병해충을 박멸하는데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예방조치(예; 병해충에 전혀 감염되지 않은 번식물, 다른 기주 제거 등)
- 배제조치(예; 농기구, 기계, 식물체, 토양 및 배양체에 대한 방제, 물리적 장벽, 스크린)
- 병해충 방제 조치(예; 경종적 방법, 소독, 저항성 품종)

생산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요구된다.

- 병해충이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국가식물보호기관에 통보
- 국가식물보호기관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병해충 방제절차 및 경작에 관한 기록 유지

2.2.3 병해충 무발생이 달성되었거나 유지되었음을 입증

병해충 무발생 상태에 관한 입증은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의 병해충 무발생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특별조사를 실시한 국가식물보호기관의 직원이나 국가식물보호기관의 정식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실시한다. 이러한 조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포장검사(재배 중 검사로도 알려져 있음)의 형태를 가지게 되나, 다른 탐지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샘플채취 후 실험실 검사, trapping, 토양검사 등).

병해충 무발생 상태는 검사 또는 시험의 횟수나 빈도(예; 1달 간격으로 3회 검사 실시)로 기재되어 입증될 수 있다. 검사 또는 기타 절차는 한 재배기간에 대해서만 관련될 수 있으나, 여러 재배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수확된 상품에 대한 검사나 시험은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에서 실시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수년동안의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요구될 수도 있으며, 과거 해당 포장에서의 기주식물 재배가 금지될 수도 있다.

입증 절차는 생산장소를 개개의 구역(plot)으로 구분하기 위한 계획에 근거 하여야 하며, 병해충의 종류와 증상에 따라서 샘플을 채취하거나 전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 주변에 병해충이 만연하고 있을 경우, 요구되는 조사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2.4 생산품의 동일성(identity), 화물의 보존성(integrity) 및 식물위생 상의 안전성

생산품의 동일성(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라벨링)과 화물의 보존성을 유지하기 위해 입증(verification) 조치가 필요하다. 생산품의 식물위생상의 안전성은 수확 이후에 유지되어야 한다.

2.3 완충지대에 대한 요건

적절한 경우,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와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생산장소나 생산포장과 연관된 완충지대와 관련된 절차가 포함된다.

완충지대의 범위는 재배 기간 중 병해충이 자연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거리에 근거하여, 국가식물보호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재배 기간 동안 적절한 간격으로 모니터링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병해충이 완충지대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국가식물보호기관의 요건에 따라 다르다.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의 병해충 무발생 상태가 취소되거나 완충지대에서의 적절한 방제조치가 요구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이든, 조사나 방제 조치를 위한 접근이 미리 보장되어야 한다. 적절할 경우, 병해충 무발생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설정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다(지역적 보고/통보 및 공표, 지역 규정, 탐지된 병해충의 방제/제거).

3. 문서화 및 재검토

완충지대에 취해진 조치를 포함하여,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을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취해진 조치들은 적절히 문서화되어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가식물보호기관은 현지에서의 감사, 재검토 및 시스템의 평가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1 일반 기록

문서자료들은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 설정에 대한 국가식물보호기관의 행정망을 통하여, 특정 병해충과 관련되어 이용 가능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용된 감시 시스템의 세부 사항(검사, 조사 및 모니터링 포함), 병해충이 존재할 경우 대응조치의 세부사항 및 생산품의 동일성, 화물의 보존성 및 식물위생상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의 세부사항에 포함된다.

또한 특정 재배기간을 병해충 무발생으로 승인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결과와 병해충 관리 기록을 포함한 특정 생산장소나 생산 포장 및 완충지대에 대한 문서자료도 이용가능해야 한다(예; 식물위생 소독처리 날짜 및 유형, 사용된 저항성 품종).

병해충 무발생 지위를 취소하고 복귀시키는 절차도 문서화 되어야 한다.

관련 병해충이 높은 수준의 식물위생상 안전성을 필요로 하여,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을 설정하고 운영하는데 복잡한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운영계획이 필요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이러한 계획은 관련 생산자와 무역업자들의 역할과 의무를 포함하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나열한 양자간 협정이나 약정에 근거하게 된다.

3.2 식물위생증명서상의 부기

국가식물보호기관이 화물에 대해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한다. 수입국에서는 이를 위해 식물위생증명서에 적절한 부기를 요구 할 수 있다.

3.3 정보 제공

수출국의 국가식물보호기관은 요청시, 수입국의 식물보호기관에게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제공한다. 양자간 협정이나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수출국의 국가식물보호기관은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의 설정 또는 취소에 관한 정보를 수입국에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